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69 발의연월일: 2025. 1. 16.

발 의 자 : 추미애・김문수・이성윤

한정애 • 이수진 • 부승찬

김한규 · 김원이 · 전종덕

정성호 · 복기왕 · 서영교

박은정 · 김용만 · 안호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, 외환, 반란, 이적죄의 경우,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,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.

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,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. 그러나 이 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,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 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.

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 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, 범죄자에게 경 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,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(안 제38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 중 "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제2편제1장"을 "「형법」 제2편제1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	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		
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	④ <u>「형법」 제2편제1장</u>		
<u>제2편제1장</u> (내란의 죄)·제2장			
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			
제1장(반란의 죄)ㆍ제2장[이적			
(利敵)의 죄], 「국가보안법」			
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군사기			
밀 보호법」(제13조의2와 제15			
조에 한정한다)에 규정된 죄를			
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			
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			
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			
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			
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			
다.			